##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47

발의연월일: 2020. 6. 29.

발 의 자: 박홍근・양이원영・오영환

양정숙 · 김남국 · 박성준

남인순 • 아줌(비) • 윤미향

권인숙 · 전혜숙 · 김경만

권칠승 · 고영인 · 윤관석

강득구 • 이수진 • 용혜인

이용빈 · 한준호 · 박상혁

김진애 · 진선미 의원

(2391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철도안전의 확보와 철도안전 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 국 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에 관한 시설의 확충·개량·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,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 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, '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'가 현행법에 별도의 장(章)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가 철도안전정책의 중요한 요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

이에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내용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도 종사자에 대한 안전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2항제6호 신 설). 법률 제 호

##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철도안전 종합계획) ① (생	제5조(철도안전 종합계획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철도안전 종합계획에는 다	2
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	
한다.	,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6.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
	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
<u>6.</u> ~ <u>8.</u> (생 략)	<u>7.</u> ~ <u>9.</u> (현행 제6호부터 제8
	호까지와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